

충 주 시 의 회
제119회 임시회
2007. 10. 16(화)

기타안건심사보고서

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

산업건설위원회

기타안건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안 건 명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도시관리계획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	2007. 10. 4	2007. 10. 4	2007. 10. 9	2007 10. 9	지역개발 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350번지 일원의 골프장 결정에 따른
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용도지역을
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
청취하고자 하는 사항

3. 주요내용

- 사업명 : 제피로스 골프장 조성공사
- 위치 :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350번지 일원
- 사업시행자 : (주)제피로스, (대표)정영기
- 사업기간 : 2006년 11월 ~ 2009년 12월
- 총사업비 : 900억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(주)제피로스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유림인 양성면 사미리 산 410,636m²와 시청 앞의 상공회의소 옆 2,038m²를 교환하고자 함
- 본 안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아직 세분되지 않은 채 지정되고 있는 관리지역 675,392m²을 보전관리, 생산관리, 계획 관리지역 중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,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지정되었던 농림지역 657,508m² 또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
- 도시계획시설의 내용 중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하고 부속적으로 진입도로와 진입도로 주변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공지로 도시 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
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본 「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」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안건 자체에 대한 가·부 결정이 아니라, 집행기관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찬성·반대·수정 또는 기타 의견을 채택하는 사안

5. 질의답변 요지

- ▶ 질의 : 제피로스의 토지와 교환한 토지의 공시지가 차이는
- 답변 : 그 사항은 모르겠고, 교환한 토지에 대하여 오늘 내 일중 등기 이전할 계획임

- ▶ 질의 : 골프장에 대한 세금체납은 해결되었는지
- 답변 : 세금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

6. 심사결과 : 의견서 채택

붙임 : 의견서 1부

의 견 서

□ 의 안 명 :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

□ 심사경과

- 의안번호 : 850
- 상정일자 : 2007. 10. 9
- 의결일자 : 2007. 10. 9
-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

□ 의 견

- 골프장 건설은 우리시의 재정과 지역경제 도움을 줄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
- 도로교통망 개선으로 수도권의 많은 골프이용객이 우리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지역 관광업과 연계하도록 유도하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
- 그렇지만 사업추진과정이나 사후 관리과정에서 수질오염이나, 농약살포에 의한 토양오염,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

2007. 10. .

산업건설위원장